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76
----------	-------

발의연월일 : 2026. 1. 15.

발 의 자 : 정혜경 · 김준형 · 김재원
윤종오 · 전종덕 · 손 솔
최혁진 · 서왕진 · 서미화
허성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을 위하여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처벌을 하고 있음.

그런데 변종 성매매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아울러, 성매매 알선업자와 광고업자, 성매매 알선과 광고를 방치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책임 및 처벌 미비하여 본 법률이 취지에 맞게 시행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성매매 정의에 변종 성매매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성매매 대상자를 고용, 인계, 모집, 성매매를 광고하는 행위, 디지털 플랫폼이 성매매 알선 광고나 거래를 방치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러 함(안 제2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 신설 등).

또한, 다수의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거나 알선하는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고(안 제18조제3항제5호 신설), 성매매 광고업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성매매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강요하는”을 “강요하거나 성매매 대상자를 고용, 모집, 인계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신체의 일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라. 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및 그 밖의 매체를 이용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정보제공, 광고, 모집, 홍보를 하는 경우

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저작권법」 제2조제30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컴퓨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이용되는 웹 사이트 및 어

플리케이션 등에서 성매매의 광고, 모집, 홍보 등의 행위를 방
치하는 경우

제18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수의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거나 알선하는 사람

제1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자매체, 온라인 등을 통하여 이 법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홍보,
광고, 후기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알선, 유인, 모집 광고를 하는 사
람

제2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7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성매매 초범자에 한해서는
처벌과 재범방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한 기준, 재발방지교육의 집행기관, 절차, 비용부담,
강사선정 및 프로그램, 평가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범죄에 사용된 물품, 전자기기, 문서, 특수매체기록은 몰수 후 폐
기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1. ----- ----- ----- ----- -----.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u><신 설></u>	<u>다. 신체의 일부 또는 일부를</u> <u>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u> <u>일반인의 수치심이나 혐오</u> <u>감을 일으키는 행위</u>
<u><신 설></u>	<u>라. 자위 행위</u>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 ----- ----- -----.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u>강요하는 행위</u>	가. ----- ----- <u>강요하거나 성매매</u> <u>대상자를 고용, 모집, 인계</u> <u>하는</u> -----

나.·다. (생략)

<신설>

<신설>

3.·4. (생략)

② (생략)

제18조(벌칙) ① · ② (생략)

나.·다. (현행과 같음)

라. 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
화, 인터넷 및 그 밖의 매
체를 이용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 및 그 행
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정보제공, 광고, 모
집, 홍보를 하는 경우

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
는 「저작권법」 제2조제3
0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컴퓨
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이용되는 웹 사이트 및 어
플리케이션 등에서 성매매
의 광고, 모집, 홍보 등의
행위를 방치하는 경우

3.·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벌칙) ① · ② (현행과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 4. (생략)

<신설>

④ (생략)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신설>

② (생략)

제20조(벌칙) ① ~ ③ (생략)

<신설>

<신설>

같음)

③ -----

-----.

1. ~ 4. (현행과 같음)

5. 다수의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거나 알선하는 사람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벌칙)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전자매체, 온라인 등을 통하여 이 법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홍보, 광고, 후기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알선, 유인, 모집 광고를 하는 사람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성매매 초범자에 한해서는 처벌과 재범방지 교육

제25조(몰수 및 추징) (생략) <u><신설></u>	<u>을 병행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대한 기준, 재발방지교육의 집행기관, 절차, 비용 부담, 강사선정 및 프로그램, 평가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5조(몰수 및 추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② 범죄에 사용된 물품, 전자기기, 문서, 특수매체기록은 몰수 후 폐기한다.</u>
--	---